

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록

일 시	2015. 8. 25.(화) 17:00 - 19:40	장 소	안암동주민센터 4층
참석자	10명(김은영, 김한민, 박현숙, 배미영, 배정학, 윤성봉, 윤정섭, 이윤하, 최도용, 홍미리)		
회 의 내 용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○○ : 회의시작 ○ ○○○ :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설명 ○ ○○○ : 예전부터 지원되었던 사업들을 별표1에 기록해 놓은 것인가 ○ ○○○ : 이 사업들이 100~200만원 정도의 사업들이라서 사회단체보조금 부서에서 일일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낭비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. ○ ○○○ :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나, 이 내용들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소지가 있거나, 기본권과의 충돌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은 없는지. 자유민주주의의 옹호발전사업, 국가안보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,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들인지. ○ ○○○ : 해당부서에서 받은 사업들인데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사업은 자유총연맹 성북구협의회에서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, 태극기달기 캠페인이다. ○ ○○○ : 국가안보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○ ○○○ : 재향군인회에서 해왔던 사업인데 6.25 행사라던지 성북구민 안보체험의 날 행사 사업을 반영한 내용입니다. ○ ○○○ :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건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건데,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꼭 넣어야 하나 ○ ○○○ : 이것은 근거만 마련해놓은 것이고,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,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하면 괜찮은 사업을 선정해서 최종선정까지 가는 것이다. ○ ○○○ : 학부모 교육 강좌 지원이 있는데, 장애인 부모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싶다고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인가 ○ ○○○ : 장애인은 관련 법에 잘되어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, 장애인 문화사업, 취업활동지원 등의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다. ○ ○○○ :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사회 			

회 의 내 용
<p>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별표에도 해당안되고 관련 조례도 없다면 신청이 안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.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○○ : 지금까지도 그동안 해오지도 않았거나 조례도 없거나 하면 보조금 지원이 어려웠다. ○ ○○○ :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이외 다른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자체가 안된다는 것 아닌가 ○ ○○○ :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도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. 여성이나 어르신, 장애인, 문화체육, 환경, 건강 등은 법령이나 개별조례에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일 뿐이다. 사실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, 복잡한 절차가 있는 사업들은 부서에서 개별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. ○ ○○○ :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 같다. ○ ○○○ : 이 별표에 나오는 내용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들인가 ○ ○○○ : 몇십년동안 쪽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다.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기는 구 차원에서도 어렵다. ○ ○○○ : 바른선거 정착 활동지원은 무엇인가 ○ ○○○ : 선거 투표를 위한 홍보,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홍보 활동 들이다. ○ 여성복지팀 직원 :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설명 ○ ○○○ : 2014년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 조례 명칭을 구지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개정하는 것인지.. ○ ○○○ :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모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. ○ ○○○ : 그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. ○ ○○○ : 개정의 취지가 뭐냐면 여성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발전도 균등하게 가자는 취지이다. ○ ○○○ : 그래서 조례 이름이 성평등 기본조례인 것 같은데,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. 요새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쓰고 오히려 성평등이라도 용어로 바꾸는 추세이기도 하다. ○ ○○○ : 성평등이라는 말이 양성평등이라는 말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. ○ ○○○ : 구체적으로는 양성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인권침해가 있다. ○ ○○○ : 안따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.

회 의 내 용

- ○○○ : 그런 건 없다.
- ○○○ : 성북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, 어떤 흐름과 사회적 분위기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일텐데, 근거있는 반론들이 나온다면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. 양성평등이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. 성평등이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의미이다.
- ○○○ : 성에 기반한 차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. 양성이라는 개념이 지나왔는데 이제와서 양성평등을 기명한다는 것은 좀 의아하다.
- ○○○ : (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하여)여성전용주차장과 비슷하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.
- ○○○ :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의견으로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인권침해적인 사업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근거 조례가 있으면 지원되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조항인데, 2가지 모두 해당이 안되는 신규사업이라면 지원 받을 근거가 봉쇄되어 있는 것이 문제 인 것 같다.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지 않으면서, 좀 더 포괄적이었으면 좋겠다. 너무 구체적이다.
- ○○○ : 신청사업이 카테고리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짓수가 너무 많고 디테일하다.
- ○○○ : 권고를 한다면 대안까지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다.
- ○○○ : 너무 구체적인 사업명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.
- ○○○ :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의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왜 구체적인 사업명이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.
- ○○○ : 기타의 사업이 자치행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자치행정에 넣고 기타를 더 집어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- ○○○ : 사업명이 들어가 있는 별표보다는 유형별로 나누어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- ○○○ : 법적 취지를 공감하기는 하는 것 같다. 관행적으로 지출되었던 것을 총괄하는 것 같은데, 인권친화적인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외에 어떤 사업들을 적시하는 것이 좋은 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- ○○○ : 직접 규정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지는 재론의 여지는 있는 것 같다.
- ○○○ :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반인권적인 규정이다라고 봐야 하는 지는

회 의 내 용

-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..
- ○○○ : 별표를 빼고 분야를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.
- ○○○ : 관내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동이나 홀리스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이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. 그런 점이 이법에 의한 배제를 당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다.
- ○○○ :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바랄 수는 없는 것 같다. 최대한 직접 규정을 하되, 다른 사업, 더 필요한 사업들에 지급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.
- ○○○ : 여기에 사업명을 기재하면 사업을 확정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것 같다.
- ○○○ : 이 사안은 참여와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는 인권침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권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. 구체성이라든지 대안을 포함한 권고가 안된다면 이 규정이 야기할 수 있는 침해성을 지적하기라도 해야 할 것 같다.
- ○○○ : 개정안에 나와있는 것과 반대의 경우는 규정되지만 않았을 뿐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분명히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것 같다.
- ○○○ : 그것은 법을 바꿔야 한다. 지방재정법 17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다. 이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.
- ○○○ :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 같다.
- ○○○ : 특정 사업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주민들, 특히 소수자의 참여와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카테고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내용이면 좋겠다.
- ○○○ : 인권침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될 것 같다는 내용도 들어 가야 할 것 같다.
- ○○○ :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한 내용은 균형적인 양성 참여의 보장을 위한 검토 의견이 있다.
- ○○○ : 성북구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인권영향평가를 하겠습니다.
- ○○○ : 센터에서 검토 의견을 내놓았는데 검토의견을 참고하시고 권고는 안하셔도 될 것 같다.
- ○○○ : 성평등 기본 조례에 관해서 논의해보겠다.

회의 내용

- ○○○ : 위원들 중에서 권고안을 작성했으면 좋겠다.
- ○○○ : 몇 년이 지나면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다시 바뀌는 사회적 분위기가 될 것이다.
- ○○○ :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다.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의미를 잘 설명하면서 권고문을 작성했으면 좋겠다.
- ○○○ : 권고문으로 끝내지 말고 다른 일을 기획해도 좋을 것 같다.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놓고 마찰도론회라든지.. 여론적으로 경청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.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이 내려 온 상황이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.
- ○○○ : 권고문을 누가 쓸 것인지
- ○○○ : 내가 쓰겠다.
- ○○○ : 지난 달 회의결과 중 영유아 보육 조례를 보육 환경 특성 상 여성이 많아서 안된다는 미수용 의견이 있음. 행정지원과 의견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음.
- ○○○ : 영유아 보육 조례 권고안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는 채 권고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향점을 보고 한 것이었다.
- ○○○ :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부서에서 어려웠던 모양이다.
- ○○○ : 성북인권페스티벌 기획 초안에 대해서 ○○○의 설명이 워졌다.
- ○○○ : 성북인권페스티벌 초안 설명
- ○○○ : 은행나무축제와 인권페스티벌을 같은 날짜에 하게 되면 인권축제가 많이 묻히게 될 것 같다.
- ○○○ : 그런 점 보다는 축제에 오는 관객을 일정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인권축제의 고유의 분위기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. 힘들수도 있는데 실재는 해봐야 알 것 같다.
- ○○○ : 함께하면 관객을 많이 올 수 있으나, 인권축제가 기억에 안 남을까 염려스러운 면이 있다.
- ○○○ : 기억에 남을 것이다.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된다.
- ○○○ : '성평등' 이라고 쓴 풍선이나 팔찌를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.
- ○○○ : 인권 마켓에서는 무엇을 팔 것인지
- ○○○ : 무엇을 할 것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면 좋겠다.
- ○○○ : 포럼은 개최할 수 있을 것 같다. '법치가 아니고 민생이다'라는 주제로 찬조 공연 같은 것도 가능하다.

회의 내용

- ○○○ : 인권센터 시민위원을 구성하였는데 전문위원은 없다. 13명의 시민위원이 위촉되었다. 이번주 금요일 안암동주민센터에서 시민위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한다.
- ○○○ :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과정에 대해서 ○○○의 설명이 있겠다.
- ○○○ :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과정 설명, 2기, 3기도 추가로 시행예정이고 오늘도 구청에서 진행중에 있다. 1박2일 캠프도 실시 예정이다.
- ○○○ : 주민인권학교 운영 교육내용 설명.
- ○○○ :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설명. 공공건축 인권영향평가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려고 한다.
- 다음회의 일정 : 2015.10.8.(목) 15:30
- 회의종료
- ※ 회의내용 중 주요논의 및 의견사항에 대해 요약 작성하였음.